

전주지방법원 2020. 10. 7 선고 2019나4055 판결 [점유회수]

재판경과

전주지방법원 2020. 10. 7 선고 2019나4055 판결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. 4. 4 선고 2018가단5381 판결

전 문

원고, 항소인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한 담당 변호사 이민호

피고, 피항소인B

변론 종결2020. 9. 23.

판결 선고2020. 10. 7.

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. 4. 4. 선고 2018가단5381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, 군산시 D 지상 E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단층

의료시설 1층 병원 1,320m² 중 제1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가, 나, 아, 사,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82.5m²(25평)를 인도하고, 2018. 8. 23.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,0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은바,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(원고가 독립적으로 병원 식당 운영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)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조지환

판사나상훈

판사오창민

별지